

재난보험제도의 의의 및 영향



양희산
전주대학교
보험학과 교수

목차

1. 해외의 재난관련 보험 제도의 현황
2.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의의 및 영향

1. 해외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가. 일반 재난위험분야

민간 및 공공다중이용시설물 등의 각종 재난시설에 대한 미국의 보험 제도는 법률에 직접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사례는 적으나, 보험가입을 유도·촉진하는 각종 간접규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시설물 소유자의 보험의식도 높아 실질적인 보험가입률은 95% 이상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피해자 보상 및 사후수습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일체 없으며, 재난발생의 원인자에게 법률에 의한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원인자 책임부담」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과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재난위험관련 보험이 대체로 임의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 및 공공기관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보험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원인에 주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1) 발달된 손해배상소송제도에 따른 높은 배상책임위험과 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발달
- (2) 개인 및 사업체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또는 사업자금의 대출(Mortgage)시 은행이 해당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을 요구하는 등 보험가입을 유도·촉진하는 각종 사회적인 간접규제의 활성화
- (3) 사회 전반적인 뿌리 깊은 「안전 최우선 주의」
- 「안전 최우선 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법과 제도는 재난시설의 소유·관리주체에게 안전과 위험관리방법의 자율적인 선택을



<표 1> 독일의 의무보험제도 및 무과실책임 법규

분 야	면 책 사 항	최저가입금액	소 멸 시 효	의무보험
철도 및 유틸리티 사업자	○ 불가항력적 사고 (자연재해 등)	대인 : 무한책임 - 단, 연금지급은 1인당 DM 3만 년 한도임 - 최저가입금액 DM 2천만 사고당 DM 4천만 년간	○ 안 날로부터 3년 ○ 사고발생일로부터 30년	철도사업자에 한하여 시행중
생산물 배상책임	○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 ○ 유통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대인: DM 1억6천만 대물: 무한책임	○ 안 날로부터 3년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
원자력	없 음	대인 및 대물 모두 무한 책임 - DM 5억 사고당	○ 안 날로부터 3년 ○ 사고발생일로부터 20년 또는 30년	○
유전공학	없 음	상 동	상 동	○
의약품	○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	DM 1백만 1인당 DM 2억 약품당	○ 30년	○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어김으로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에게 엄중한 책임부과 및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달리 많은 재난분야에 대해 의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보험제도의 책임부과원칙은 무과실 또는 엄격책임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의무보험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다양한 의무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방차원의 의무보험과 주(canton)에서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나. 특수 재난위험분야

미국의 환경법률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대응전략위주의 체계와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수많은 소송과 판례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재난발생에 대비 환경재난업체

의 「재정부담능력 사전증명제도」를 연방차원의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환경재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준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이는 보험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보험회사가 업체를 대신하여 피해자 보상, 소송 및 합의 등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들을 처리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에 「환경오염배상법(Environmental Liability Act)」을 제정·시행하여 환경재난시설에 대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가입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당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현장의 정화를 의무보험의 가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시설물은 공장, 플랜트, 오염물질의 저장·취급시설과 같은 영속적인 시설물과 기계, 기구, 자동차, 기타

<표 2> 스위스의 의무보험제도

구 분	재난분야	의 무 가 입 대 상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 대상	시설 재난	철도 및 댐
		케이블카 및 스키리프트
		송유관(파이프라인) 및 가스유틸리티
	산업 재난	전기, 상 하수도 등의 유틸리티
		근로자재해
	교통 재난	자동차 및 자전거
		선박(호수, 강, 바다)
		항공기
	화재 등 재난	수질오염물질의 저장탱크
		원자력발전소(핵연료의 수송 포함)
대규모 스포츠행사		
정부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사업		
州(Canton)에서 시행하는 의무 보험 대상	시설 재난	미장원
		학교
		댐
		호텔 / 레스토랑
		아영장
	기타 재난	변호사, 등산안내원, 스키 강습자, 소방대 등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 및 보조적 구조물로서, 「환경오염배상법(ELA)」에서는 이들 시설물을 10개의 군으로 일차 분류하고, 각 군별 세부 시설물의 종류를 총 96개 시설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의의 및 영향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재정운영과 재난복구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은 손해보험업계와 대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 대 국민에 미치는 영향

(1) 자주적 배상책임의식의 신장

재난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는 피해당사자 자신의 신체 및 재물손해와 제3자(3rd Party)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배상책임손해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피해당사자 자신의 신체 및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대책을 강구하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쉽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배상책임의식이 높지 못하고 재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으로서 보험가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의무화되어 있는 재난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재난관련 보험제도를 개발하여 각종 시설물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케 함으로써 자주적 배상책임의식을 크게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덕적 해이의 방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재난 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자 또는 배상 주체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피해 국민은 막무가내로 재난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최종배상책임(ultimate liability)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도 피해 국민의 구제차원에서 막대한 금액을 보상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관계는 정부의 최종배상책임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만연시켰

고, 그 결과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었다. 뿌리 깊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합리적인 배상수단의 사전준비에 의한 자주적 부담없는 시정되기 어렵다. 정착되기까지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고예방기능의 확대

국가에 의해 각종 재난의 대비책으로서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이 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사고예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위험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제와 보험요율의 할인·할증제를 도입할 것이므로 국민들이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손해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손보시장 규모의 확대

새로 개발될 재난보험은 그 담보 대상 및 위험이 기존의 재난보험보다 넓고, 그 동안 보험사각지대로 방치된 많은 영역을 포괄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 보험은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수많은 다중이용시설물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각종 산업시설물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업로서는 획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장기보험과는 달리 전통적인 일반 손해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1세기에 최대의 재난영역으로 대두되는 환경오염 분야를 담보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그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보험기술의 제고

신규 재난보험에서 담보할 시설물은 대규모 시설이 많고 그에 따른 위험의 종류가 다양하고 위험 정도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고도의 언더라이팅 기술과 재보험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 재난보험의 도입은 보험요율의 자유화 정책과 맞물려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질적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을 주축으로 하면서 재물보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 재난보험의 영역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공하자배상책임보험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전문성, 경험, 담보력 등이 모두 불충분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선진 보험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보험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보험기술을 한 차원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3) 위험관리 기능의 확대

대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국민들이 보험사의 적극적인 현장 사고예방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을 통한 사고 수습 기능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활동을 통한 사고예방 기능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위험관리 부서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기법을 고도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조직(예컨대 화재보험협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